





관의 특허감정을 받아 ①④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발안을 품보았고서도 호황상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점, ② 우량국, 통치국, 경보 국 및 감시국 등 이미 설치된 4개 국의 자동우량정보시설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감시국을 제외하고 교체해야 할 자동우량정보시설을 선정하였고, 이런 경우에는 ③④의 특허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 받아 잘 알면서도 처음 입찰공고한 내용대로 제공하고하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으로 미루어 볼 때, DC는 업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①④과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.

## ② 관계기관 의견

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5년 이후 구매한 4건의 자동우량정보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정책요구 양정  
계약이 행능력 실사 업무를 태만히 한 DC의 행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「복무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70조 제2호의 강제사유에 해당한다.

또한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위 사람이 법률자문을 받고도 차문내용과 달리 수의계약을 강행한 행위는 그 부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, ①④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이 있으며 위 사람이 응답여원에 말하는 계약을 ①④과 수의계약한 사실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

기하기 위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의 근본 취지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임실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.

조치할 사항  
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재난예警보시설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DC를 국립공원관리공단 「인사규정」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(정직)하시기 바랍니다.(문책)